

# 예산총칙

2016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443,103,649	43,293,109
일반회계	1,235,953,296	37,078,599
특별회계	207,150,353	6,214,511
공기업특별회계	155,245,430	4,657,36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8,872,028	2,366,16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6,373,402	2,291,202
기타특별회계	51,904,923	1,557,148
주택사업특별회계	62,132	1,864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030,673	240,920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704,000	21,12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2,355,338	670,660
교통사업특별회계	18,134,114	544,023
대지보상특별회계	1,716,565	51,497
수질개선특별회계	902,101	27,063

제 2 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4 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사업은 별첨 『해당없음』 와 같다.

제 5 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 와 같다.

제 6 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6,103,761천원』 으로 한다.

제 7 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액은 『3,500,000천원』 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